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46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김길영, 강석주, 김규남,
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박춘선, 유만희,
윤기섭, 윤종복, 이상욱,
이성배, 이종환, 임규호,
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
허·훈, 홍국표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인 「청년기본법」과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등과 상이하여 규정하고 있어 청년 정의를 「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」에 명시된 규정을 인용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되게 적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청년’의 정의를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라 규정함 (안 제3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청년”이란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청년</u>”이란 「<u>민법</u>」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“<u>청년</u>”이란 「<u>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</u>」 제3조제1호에 <u>따른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인 「청년기본법」 과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등과 상이하여 규정하고 있어 청년에 대한 규정 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, 이에 청년 정의를 「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」 에 명시된 규정을 인용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
- 안 제3조(용어의 정의)에서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고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 분석관	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